

#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의안 번호	4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법제처(법령정비총괄과) 및 행정안전부(자치법규과)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**일본식 한자어**를 **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**를 추진 중인바,
- 우리 군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, 자치법규에서 쓰이는 용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평창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인용사항 일괄 정비  
⇒ 「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」 등 8개 조례, 8건 정비

용 어	순화어	인용 자치법규	건수
계기하다	규정하다	•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	1
구좌	계좌	•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	1
납골당	봉안당	•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	1
부락	마을	•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•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• 평창군 반 설치 조례	3
지득하다	알게 되다	•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	1
행선지	목적지	•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1

### 3. 참고사항

가. 추진근거 : “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 알림”

- 행안부 자치법규과-520('17.10.11.), 도 교육법무과-9287('17.10.12.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

1) 입법예고 : 생략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(단순 명칭 변경)

2) 규제심사 : 규제사항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##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구좌”를 “1계좌”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후단 중 “묘지.납골당”을 “묘지·봉안당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 반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다목 중 “자연부락”을 “자연마을”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행선지”를 “목적지”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계기”를 “규정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농업기반 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자연부락”을 “자연마을”로 한다.

제8조(「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후단 중 “자연부락단위”를 “자연마을 단위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□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”(이하 “나눔운동”이라 한다)이란 <u>1구좌</u> 700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창군 저소득층에게 후원하여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1계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### □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 (생략)</p> <p>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<u>지득한</u>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,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</p>	<p>제4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알게 된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하여야 한다.	-----.
---------	--------

□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. 하수.폐수.쓰레기처리 업무, 시 체화장 업무 및 묘지.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.	제3조(장려수당) ----- -----. ----- ----- 묘지.·봉안당- ----- ----- ----- -----.

□ 평창군 반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획기준) ① (생 략) ②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,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. 다만,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	제3조(구획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다. ----- ----- 자연마을 ----- -----.

□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차량지원 신청)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행선지</u> 및 경유지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4조(차량지원 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목적지</u>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 및 지적(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)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법 제11조의 각호에 <u>게기</u>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</p>	<p>제11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규정</u>----- -----</p>

득하였을 때 2. ~ 6. (생략)	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관리자의 선정) ① (생략)  ②조합 <u>몽리지역</u> 이외의 지역은 <u>자연부락</u> 단위로 한사함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몽리면적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.  ③ (생략)	제3조(관리자의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  ②----- <u>자연마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□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능) ① (생략)  ②농기계수리는 읍.면.리동 <u>자연부락단위</u> 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.  ③ (생략)	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 ②----- <u>자연마을 단위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감사실장 남동선
연락처	(033) 330 -2206